

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안은 2023. 5. 30.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. 6. 1.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-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조정으로 2023년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'재무활동' 금액이 당초보다 20%를 초과하여 변경됨.
-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¹⁾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'예치금 회수' 금액이 당초 29억 9천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6백만원에서 35억 4천만원으로 5억 4천 4백만원 증가하였고, '기타수입' 금액이 6백만원 순증하였음.

- 예치금 회수 : 2022년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*를 통한 예치금 감액(△200백만원), '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' 미집행(600백만원), 일반사업비 및 기본경비 미집행(106백만원), 이자수입 증가분(38백만원)
- 기타수입 : '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' 사업 집행잔액(6백만원)

○ 또한, 중앙부처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'2030 세계 박람회 유치 홍보지원' 사업비 신규 편성 및 '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' 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예상 불용액 감액 등으로 '비용자성사업비' 8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음.

- 비용자성 사업비 : '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지원' 사업비 신규 편성(41백만원), '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' 사업비 감액(△130백만원)

○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'재무활동(예치금)' 금액이 당초 10억 8천 3백만원에서 17억 2천 2백만원으로 6억 3천 9백만원 증가하여 59.0% 변경되었음.

〈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〉

〈수입계획〉

〈지출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당초 (A) | 1차 변경 (B) | 2차 변경 (C) | 3차 변경 (D) | 총 감 (D-A) | 구 분 | 당초 (A) | 1차 변경 (B) | 2차 변경 (C) | 3차 변경 (D) | 총 감 (D-A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계 | 4,056 | 4,056 | 4,056 | 4,606 | 550 | 계 | 4,056 | 4,056 | 4,056 | 4,606 | 550 |
| 일반회계 전입금 | 1,000 | 1,000 | 1,000 | 1,000 | - | 비용자성 사업비 | 2,970 | 2,970 | 3,011 | 2,881 | △89 |
| 이자수입 | 60 | 60 | 60 | 60 | - | 기본경비 | 3 | 3 | 3 | 3 | - |
| 기타수입 | 0 | 0 | 0 | 6 | 6 | 예치금 | 1,083 | 1,083 | 1,042 | 1,722 | 639 |
| 예치금회수 | 2,996 | 2,996 | 2,996 | 3,540 | 544 | | | | | | |

※ 1차 변경('23.2.16.) : '동해·울진 산불지 복구지원' 사업 예산과목 변경

※ 2차 변경('23.4.4.) : '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지원' 사업 신규 편성으로 인한 지출계획 변경

4. 검토 의견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 5억 5천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5억 4천 4백만원) 및 기타수입(6백만원)에 반영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비융자성사업비(△8천 9백만원) 및 예치금(6억 3천 9백만원)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 재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.

〈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 〉

(단위 : 백만원)

| 정책사업 / 단위사업 | 조정내역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당초(A) | 변경(B) | 증감(B-A) |
|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| 2,970 | 2,881 | △89 |
|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(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) | 2,970 | 2,881 | △89 |
| 재무활동(행정국 대외협력과) | 1,083 | 1,722 | 639 |
| 보전지출(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) | 1,083 | 1,722 | 639 |

※ 자료근거 :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지출계획,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('23.5.30.) 재구성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에서는 기금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‘재무활동(예치금)’ 금액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59.0%, 6억 3천 9백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2022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기금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.
- 다만, 비용자성사업비 중 “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” 사업을 기존 대행사 선정방식에서 사업 직접수행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1억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81.3% 감액된 바, 사업추진 구조를 효율화하여 투입대비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< “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” 사업예산 : 3천만원 >

(단위 : 천원)

| 예산과목 | | | 예산 | 세부내역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|
| 단위사업 | 세부사업 | 통계목 | | |
|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|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| 사무관리비 | 25,000 | -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비 : 5,000천원 · 장소대관, 현수막 제작, 비품구입 등 - 지역상생사업 홍보비 : 20,000천원 |
| | | 행사운영비 | 5,000 | - 강 사 료 : 4,000천원 · 강사료 1회당 20만원 * 20회 = 4,000천원 - 기타 부대비용 : 1,000천원 |

- 또한, 예치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별 지출 일정을 감안하여,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최대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□ 예치금 관리현황 (2023. 5. 31. 기준)

○ 시금고 예치 현황

(단위 : 천원)

| 총 액 | 시금고 예치금 |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| 공공예금 | 정기예금, MMDA |
| 4,178,744 | 778,744 | 3,400,000 |

○ 세부 내역

(단위 : 천원)

| 계정과목 | 금 액 | 기 간 | 이 율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|
| 공공예금 | 778,744 | - | 2.02 |
| 정기예금 | 1,000,000 | 12개월 | 4.92 |
| | 900,000 | 4개월 | 4.40 |
| | 500,000 | 6개월 | 4.64 |
| MMDA | 1,000,000 | 수시입출금 | 3.46 |
| 합 계 | 4,178,744 | | |

| | | |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전문위원 | 김 정 덕 | 입법조사관 | 이 태 기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